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보호구역의 변경)”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수도사업자,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변경·해제 검토 시 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따른 공고, 지적고시, 협의 등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3호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가 설치한 설비를 포함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제12조제3호타목(중전의 카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호소(湖沼)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설치·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설치·폐기 과정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할 것

-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민
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u>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해제) ① <u>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수도사업자,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변경·해제 검토 시 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u>

<신 설>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 차. (생략)

<신 설>

여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따른 공고, 지적고시, 협의 등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
 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
 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
 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
 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가 설
 치한 설비를 포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
 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 제28조에 따
 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
 合法人)·농업회사법인
 (農業會社法人)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타. -----카목-----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1) ~ 3) (생략)

4.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
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 다.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7.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호소(湖沼) 등의 수면 위
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
설

1)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설치·
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
(설치·폐기 과정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
운영할 것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
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로서 해당 주민의 소득증

8. · 9. (생략)	<u>대에 기여할 것</u> 8. · 9. (현행과 같음)
--------------	--